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### 생보업계, 계약 전 발병시 보험금 지급 약관에 명기

- 일본 생명보험 업계는 보험계약 전 이미 발병한 질병에 대해서도 계약자가 인식하지 못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개정 보험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약관에 명기할 것으로 알려짐.
  - 보험계약 이전에 발병된 질병에 대해서는 도적적 헤이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.
  - 그러나 일본생명보험협회 규약에는 계약 전 발병사실을 계약자가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에 한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, 그동안 대다수 생명보험회사들은 약관에 이러한 내용을 명기하지 않아 계약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음.
  - 이와 관련된 분쟁을 차단하고자 생명보험업계는 내년 개정 보험법 시행에 맞추어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험약관에 명문화하기로 함.
  
- 스미토모생명 등 대부분의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 전 발병에 대해 일정한 조건 충족 시 보험금 지급을 약관에 명기하기로 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계약의무 위반 논란은 진정될 것으로 예상됨.
  - 내년 4월 약관 개정을 앞두고 있는 스미토모생명은 정확하고 충분한 사전 고지가 있고, 계약자가 발병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 한해 보험계약 이전 질병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추가하기로 결정함.
  - 아울러 니혼생명과 다이이치생명, 메이지생명 등 메이저 생명보험회사들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, 계약 전 발병과 관련해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계약의무 위반 논란은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됨.

(FujiSankei Business I, 12/11)